



제 433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무위원회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디지털다중피해사기 관련 피해구제·처벌 강화〉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80호)

2025.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입법의 배경 및 제정안의 구성	5
2.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등 정의	10
3.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대한 대응 등	15
4.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의 피해 방지 책임 등	18
5. 금지행위 등	25
6. 피해구제 등	31
7. 수사 등에 관한 특례	37
8.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45
9. 가중처벌	57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10. 14.

다. 회 부 일 : 2025. 10.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각종 통신·금융 기술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복잡다변화에 따라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바, 신변종 수법의 사기범죄로서 보이스피싱 및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통신·금융수단을 활용한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와 결합한 사기 또는 사이버사기와 같이 다중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디지털다중피해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디지털다중피해사기범죄는 다수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중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피해자가 단기간 내에 양산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사회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고, 사기이용 계

좌지급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일부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피해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주관할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재범 방지를 위해 신변공개·위장수사 및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규정과 함께 가중처벌 등의 벌칙의 특례를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 및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및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전기통신사업자”, “금융회사”, “피해자”, “사기이용계좌”, “피해금” 및 “이용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방지 및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경찰청장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마.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위원회를 두고, 대책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바. 경찰청장 및 금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디지털다중피해사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고, 금융회사 및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8조).

사. 금융회사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와 관련하여 피해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조치 및 그 밖의 피해 구제 절차 및 처벌 등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음(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자.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안 제19조).

차.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

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함(안 제21조).

카.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송달받은 정보와 범죄 경력정보 및 전과사실을 등록하고, 해당 등록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타.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음(안 제31조).

파. 법원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나 범죄를 범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신상정보의 등록기간(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며, 공개명령은 경찰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함(안 제33조 및 제34조).

하.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범죄수익이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범죄수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상습범은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37조).

Ⅲ. 검토의견

1. 입법의 배경 및 제정안의 구성

□ 최근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다단계사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이하 “디지털 다중피해사기 범죄”라 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음.

○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39%가 폭증하여 2024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 중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6.6%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가장 높은 발생비중을 기록하였음.

【표1】 2019~2024년 연도별 사기범죄 발생 건수·비중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범죄 발생건수	1,611,906	1,587,866	1,429,826	1,482,433	1,520,200	1,583,108
사기범죄 발생건수	304,472	347,675	294,075	325,848	347,901	421,421
사기범죄 비중	18.9%	21.9%	20.6%	22.0%	22.9%	26.6%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국민의 안전한 일상,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2025. 7. 30.

○ 특히 디지털 다중피해사기 범죄는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

-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13.6만 건에서 2024년 22.8만 건으로 약 67.6%가 증가하였고,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2019년 대비 감소
하였으나 피해액은 오히려 33.6% 증가하였음.

【표2】 2019~2024년 사이버사기범죄 및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이버사기범죄 발생건수	136,074	174,328	141,154	155,715	167,688	228,434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37,667	31,681	30,782	21,832	18,902	20,839
보이스피싱 피해액	6,398	7,000	7,744	5,438	4,472	8,545

자료: 경찰청,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은 디지털 다중피해사기 범죄는 「형법」 외에도 각 개별 법률
에서 관련 절차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각 개별 법률의 소관 부
처가 상이하고, 피해방지 구제 절차가 구분되어 있어 수사기관 단독으
로 또는 하나의 부처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디지털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법」 상 사
기죄¹⁾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죄²⁾로 처벌되나, 전기통신금융사기³⁾

-
- 1)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2)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
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및 유사수신행위⁴⁾, 다단계판매 금지행위⁵⁾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⁶⁾.

○ 디지털 다중피해사기 범죄와 관련된 이들 행위를 규율하는 각 개별 법률은 소관 부처가 다르고, 각각의 행위에 따라 피해방지 및 구제 절차가 구분되어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위원회가,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소관하고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에 따라 지급정지 등 피해방지 및 피해환급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나, 나머지 행위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기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방지 및 피해환급 절차가 부재한 상황임.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

3.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6) 이들 행위의 경우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한 처벌 조항과 함께 「형법」 상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제정안은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② 사기죄 중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한 행위로써 다중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디지털다중피해사기’로 정의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피해방지 및 구제, 수사,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며, 그 범죄의 규모·형태 등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안과 같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통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입법적 방향으로 판단됨.

- 디지털다중피해사기는 그 특성상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
- 이들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사전 방지부터 수사 및 피해구제, 재발방지까지 전 영역에 걸쳐 대응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그 동안 정부 내 각 기관별로 대응해 왔으나 유기적인 대응이 부족한 측면⁷⁾이 있었음.

7) 정부도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이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정보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 하에 2025년 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제21대국회에서 「사기방지 기본법안」(2117062, 김용판의원 대표 발의)을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⁸⁾한 사례가 있고, 제22대국회에서도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2215665, 채현일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서 심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21대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기방지 기본법안」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대응을 위해 경찰청장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특정사기범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공개명령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음.

○ 제22대국회에서 발의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의 경우에도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대응을 위해 경찰청장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도 경찰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⁹⁾이라고 밝힌 만큼, 디지털다중피해사기 전담 부처 등을 감안하여 제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래에서는 각 개별 조문 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함.

8) 행정안전위원회는 동 제정안을 2023. 11. 23.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신설 및 신상정보 등의 공개명령 집행 등에 대한 법무부 등의 이견이 있어 의결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9)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정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연속 피해 감소’, 2026. 2. 25. 참조

2.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등 정의

□ 제정안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와 금융회사 등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다중피해사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중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나.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범한 행위 3)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범한 행위 2.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제 정 안

-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피해자”란 디지털다중피해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6. “피해금”이란 디지털다중피해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
-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용자

□ 제정안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① 전기통신금융사기¹⁰⁾, ② 형법 상 사기¹¹⁾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¹²⁾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유사수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11)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2)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

신행위¹³⁾, ▲다단계판매¹⁴⁾의 방법으로 범한 행위, ▲전기통신¹⁵⁾을 이용하여 범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참고로, 개별 처벌 조항과 「형법」 상 사기죄의 관계를 살펴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 상 사기죄와는 입법목적이 다르고 별개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형법」 상 사기죄의 특별법 관계에 있지 않고, 만약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및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¹⁶⁾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임¹⁷⁾.

- 다만,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와 다단계판매 금지행위는 그 자

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 1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 16)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17)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¹⁸⁾에 있다고 보고 있음¹⁹⁾.

○ 제정안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범하거나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행위, 전기통신 이용 행위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가 별도의 범죄라는 법원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고, 사기죄 중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행위, 전기통신 이용 행위로 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범위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죄의 유형을 포함하려는 취지이나, 유사수신행위와 다단계판매의 경우 대면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최근 금융산업의 발달로 유사 P2P 대출, 가상화폐 등을 사칭하는 신·변종 유형이 등장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대면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

18)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9)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은 주로 대면 거래를 가정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2215665,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를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 금융회사, 피해자, 사기이용계좌, 피해금, 이용자 등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정의조항을 이용하여 대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등 대면편취 유형도 포함하면서 ‘사기이용계좌’ 및 ‘피해금’의 범위도 이러한 행위가 포함²⁰⁾되도록 개정²¹⁾되었으므로, 제정안의 해당 정의²²⁾도 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2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21) 2023. 5. 16. 개정

22)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3.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대한 대응 등

- 제정안은 ① 경찰청장 및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및 예보·경보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②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
에 대해 제재·보완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 정 안
제6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경찰청장 및 금융위원회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예보·경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응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6. “피해금”이란 디지털다중피해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제정안과 같은 대응을 하도록 규정²³⁾하고 있음.

○ 제정안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위원회의 대응 규정을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및 예보·경보의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경찰청장과 상호협력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이러한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유형 중 하나로 다단계판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행위를 규정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사항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 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²⁴⁾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전

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보·경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3항에 따라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4) 2023. 5. 16. 개정

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신속하게 전
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
가 부여되었다는 점(제2조의2제4항)을 감안하여, 제정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4.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의 피해 방지 책임 등

□ 제정안은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8조).

○ 아울러,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 또는 의심사례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 정 안
제3장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환경 조성
제8조(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 금융회사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 및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정 안

제9조(신고의무) ①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먼저, 피해방지책임(제8조)에 대해 살펴보면, 제정안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성 예금 등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각각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²⁵⁾은 제정안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성 예금 등을 해지하는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²⁶⁾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²⁷⁾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규정된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상 규정을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도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음.

○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제정안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관련 내용이 일부 다르나, 제정안 제3조

26)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7)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에서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방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조치는 제정안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신고의무(제9조)에 대해 살펴보면, 제정안은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사기관은 신고가 있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금융회사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 의무를 부여할 경우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관련 제도의 개정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6. 2. 3. 개정되고 2026. 8. 4. 시행될 예정인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8. 4.)

제13조의4(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①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공유분석기관(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정보공유분석기관"이라 한다)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1. 피해발생계좌(피해자의 계좌로서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말한다), 사기이용계좌 및 사기관련의심계좌와 그 계좌의 거래내역 및 명의인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5호의 전기통신번호, 같은 조 제20호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의 단말기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 및 그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같은 조 제10호의 접근매체 및 그 밖의 매체·수단에 관한 정보(이하 이 호에서 "개인정보등"이라 한다)를 수집하는데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유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정보 중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8. 4.)

- ③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신이 분석·생성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 ④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 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고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또는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및 제38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법률의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 ⑦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8. 4.)
2. 제공받은 정보가 제공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할 것 3. 정보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피해 확산 방지 및 개인·신용·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처리,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운영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시 대응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임.

5. 금지행위 등

- 제정안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목적 정보의 유통,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범행수단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9조·제42조).

제 정 안
제10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목적 정보의 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목적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목적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목적으로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목적 범행수단의 유통·판매 금지) 누구든지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목적으로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유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 정 안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접근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제42조(과태료)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7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8조를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이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먼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목적 정보유통 금지(제10조)와 관련하여,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44조의⁷²⁸⁾에서는 일반적인 불법정보의 유통금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함.
-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제정안은 이와 같은 「정보통신망법」 상의 ‘범죄목적 정보’ 유통 금지 원칙 및 그 절차를 명시하고,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의 특성상 요청 주체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분명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경찰청장으로 일원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음으로, 표시·광고 금지(제11조), 유사상호 사용금지(제12조)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행위법”이라 함)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 「유사수신행위법」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²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³⁰⁾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³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³²⁾하고 있음.
- 제정안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목적으로 표시·광고한 자와 금융업 유사 상호를 사용한 자를 엄하게 처벌하여 사전적으로 이러한 표시·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음으로, 범행수단 유통·판매 금지(제13조)와 관련하여,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각각 범죄목적의 접근매체 유통 등의 행위,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음.

2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³³⁾하고,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³⁴⁾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은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³⁵⁾하고 있음.

3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34)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35)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제정안은 이와 같은 개별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 목적의 접근매체 또는 단말장치의 유통 등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단말장치에 대한 유통이 없더라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율방식과 같이 ‘전기통신역무’를 유통한 경우를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피해구제 등

- 제정안은 금융회사가 디지털다중피해사기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임시 조치와 지급정지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피해구제·처벌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4장 피해구제 등
제14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관련 금융회사의 조치와 피해구제 및 처벌 등에 관한 준용) ① 금융회사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체 또는 송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조치
2.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3. 그 밖에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금융회사의 협조 조치 등 피해 구제에 필요한 조치
② 디지털다중피해사기와 관련한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조치 및 그 밖의 피해 구제 절차 및 처벌 등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제4조(지급정지),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9조(채권의 소멸),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 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14조(수수료),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제16조(벌칙), 제17조(양벌규정)(제15조의2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및 제18조(과태료)제1항

제 정 안
및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로 본다.

□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임시조치,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피해금 환급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임시조치) 금융회사는 자체점검 또는 정보공유를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체·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임시조치 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함.
- (지급정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임시조치 후 본인확인절차 결과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추정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함.
-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인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이 공고한 이후 이의제기 등이 없으면 명의인의 (예금)채권은 소멸함.

○ (피해금환급)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 후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함.

□ 제정안은 이와 같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구제절차를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를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은 아래 표와 같음.

【표3】 제정안에 따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준용 규정

절차	내용	근거조항
① 임시조치	자체점검·정보공유 등으로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될 경우 이체·송금·출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	§2의5
② 피해구제 신청 및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청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	§3, §4
③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명의인·피해자 제외), 압류·가처분 등 신청, 체납절차 금지	§4의2
④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5
⑤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	§6
⑥ 지급정지 등 이의제기 및 종료	명의인은 채권소멸절차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제한,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이의제기가 이유 있거나 종료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제한, 채권소멸절차를 종료	§7, §8
⑦ 채권 소멸 및 피해환급금 지급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후 2개월이 경과하면 명의자의 채권은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을 지급(피해금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미지급)	§9 ~ §11

⑧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환급 범위에서 소멸	§12
⑨ 소멸채권 환급 청구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이의제기 요건에 해당하고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	§13
⑩ 전자금융거래 제한	지급정지 조치를 받거나,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	§13의2
⑪ 전화번호 이용중지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13의3
⑫ 계좌자료 제공 특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해 금융거래 정보, 주민등록자료 등 공유 가능	§15
⑬ 기타	수수료, 포상금의 지급,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	§14, §14의2, §16, §17, §18

□ 다만,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임시조치, 지급정지 등의 조치는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 정보공유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직접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임시조치는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하는 계좌에 대해 이루어지고, 지급정지는 피해자·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정보공유 등을 토대로 금융회

사가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하는 경우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이 임시조치 및 지급정지는 각 금융회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의심거래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한다고 추정·의심하는 경우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역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유사수신행위의 요건³⁶⁾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고, 다단계판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행위의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하거나 사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같이 금융회사가 이를 직접 판단하기에는 곤란할 수 있음.

- 이 경우 금융회사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관련 임시조치 또는 지급정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임시조치 또는 지급정지 조치를 하더라도 악의적 신청자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 금융위원회도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 또는 전기통신 관련 행위는 그 원인행위가 금융회사 밖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 또는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여 임시조치 또

36) 일반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보장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함.

는 지급정지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2215665,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에서는 경찰청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피해의심거래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임시조치 또는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관련 피해의심거래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기관 등이 판단하여 요청하고, 금융회사가 이에 지체없이 따르도록 별도의 절차를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정안이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않은 조항 중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11조의2)³⁷⁾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명의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함께 준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거짓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7. 수사 등에 관한 특례

- 제정안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특례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 증거 제한, 통제, 비밀준수 의무, 면책,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제 정 안
제5장 수사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

제 정 안

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1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5조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1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18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 정 안

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9조(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가수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 정 안

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수사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①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범죄 신고자등”이라 한다)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를 준용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 신고자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정안에 따르면, ▲신분비공개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관련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를, ▲신분위장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계획·실행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이를 사용하여 계약·거래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함.

-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사법 경찰관리는 검사를 거쳐 법원의 허가³⁸⁾를 받아야 함.
- 수사기간은 양자 모두 최대 3개월이나,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국가경찰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보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

【표4】 제정안에 따른 수사 특례 주요내용

구분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개념	경찰관이 신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수사방법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문서·기록 등을 작성·변경·행사하거나 위장 신분으로 계약·거래 등의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수사방법
요건	범죄혐의 + 수사 필요성	범죄혐의의 상당성 + 보충성
절차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사전승인	검사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 (긴급 시 48시간 이내 사후 허가 필요)
기간	최대 3개월	최대 3개월 (법원 허가로 총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통제	국가경찰위(종료시) 보고 국회 소관 상임위(분기) 보고	

- 이와 같은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에서 ‘디

38)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디지털 성범죄³⁹⁾에 대해 도입⁴⁰⁾하고 있음.

-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한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범죄수법이 진화하고 있고, 해외서버를 기반으로 한 폐쇄적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등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적인 수사방법으로 범죄 증거의 수집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두 법률은 기존에 판례가 제한적으로 허용해온 ‘기회제공형 수사’⁴¹⁾를 법제화한 것으로, 합법적이면서도 적시에 필요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디지털 성범죄 범행 의지를 억제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참고로, 경찰에 따르면 2021년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5년 8월 말까지 총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여 2,171명을 검거(구속 130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3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제11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죄(정보통신망 이용 한정)(제15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디지털성범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4조의2),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

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2021년 9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25년에 각각 도입되었음.

41) 판례는 위장수사와 관련하여 범의유발형 수사과 기회제공형 수사로 구분하면서,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경우는 함정수사로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672판결 등)고 하여 범의유발형 수사를 함정수사로 표현하면서 위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반면,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판결 등)고 하여 기회제공형 수사는 허용하는 입장임

□ 제정안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가 디지털 성범죄와 유사하게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기존 수사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이러한 위장수사 방법을 도입하려는 것임.

○ 디지털다중피해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점, 최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는 총책·중간책·현금수거책 등으로 세분화되고, 해외에 거점을 두는 등 조직적이고도 대규모화되고 있으며,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 등을 통해 추적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⁴²⁾한 「사기방지 기본법안」(2117062, 김용판의원 대표발의)에서도 특정사기범죄⁴³⁾에 대해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42) 행정안전위원회는 동 제정안을 2023. 11. 23.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신설 및 신상정보 등의 공개명령 집행 등에 대한 법무부 등의 이견이 있어 의결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되었음.

4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로 한정한다]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 그 밖에 제정안에서 위장수사와 관련한 절차, 증거 제한, 통제, 비밀준수 의무, 면책,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은 기존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의 규정과 사실상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다만, 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해서도 긴급한 경우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도록 제도화⁴⁴⁾하였으므로, 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4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8.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제정안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하고, 법원이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행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자의 성명·주소·사진 등 신상정보의 공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며, 공개명령은 경찰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부터 제36조)

제 정 안
제6장 신상정보 등록 등
제24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② 법원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25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28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5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24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제 정 안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신상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⑦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제 정 안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에 따른 송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25조제5항·제6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 범죄 경력정보

2. 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실 및 등록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회 결

제 정 안

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과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의 열람, 통지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10년 초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1.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

2.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제 정 안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본다.

3.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이 적용(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⑥ 법무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3개월
2.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 6개월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1년

⑧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공개기간 동안에는 3개월마다 제7항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제 정 안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로 부과받은 제33조에 따른 공개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4. 등록기간 중 제40조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거나 등록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①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지난 때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 정 안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통지 신청과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33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28조에 따른 등록기간(이하 “공개기간”이라 한다)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
2. 제1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제 정 안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및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⑤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한 사항, 실명인증과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공개명령의 집행) ① 공개명령은 경찰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② 법원은 공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공개대상자, 공개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송부와 공개명령의 집행·공개절차 및 관리 등

제 정 안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비밀준수) ① 등록대상 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공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용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 제정안과 유사한 형태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는 현재 「청소년성보호법」⁴⁵⁾과 「성폭력처벌법」에서 운영하고 있음.

4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 두 법률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는 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제도임.
-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경각심을 갖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며, 등록대상자에게는 등록된 신상정보로 인해 쉽게 적발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기관은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제정안은 이러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제도를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자에게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사과 재범 방지를 추구하려는 취지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가 금융활동 등의 기반이 되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의 구성을 보면, 제정안 중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사항(제6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구성을,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제7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성을 따르고 있음⁴⁶⁾.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등록정보”를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음.

【표5】 제정안과 관련 입법례 비교

유사 입법례	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제6장 신상정보 등록 등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24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25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제26조(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27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28조(등록정보의 관리)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29조(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제30조(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31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48조(비밀준수)	제32조(비밀준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7장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로 유죄판 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33조(등록정보의 공개)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제34조(공개명령의 집행)
제54조(비밀준수)	제35조(비밀준수)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36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 다만, 제정안과 같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범죄 예방 효과 및 재범 억제 가능성 등과 대상자의 사회적 인격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고, 다른 재산 범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⁴⁷⁾한 「사기방지 기본 법안」(2117062, 김용판의원 대표발의)에서도 특정사기범죄 행위를

47) 행정안전위원회는 동 제정안을 2023. 11. 23.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신설 및 신상정보 등의 공개명령 집행 등에 대한 법무부 등의 이견이 있어 의결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되었음.

한 자에 대해 제정안과 유사한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하는 제도를 포함하였으나,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제출된 바 있음⁴⁸⁾).

- 당시 법무부는 특정사기범죄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다른 재산 범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해외 입법례 등 연구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중·장기적인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
- 당시 법원행정처는 대상자의 사회적 인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도입하는 것은 범죄 예방의 필요성, 재범 가능성 등을 살펴 신중할 필요가 있고, 범죄예방의 필요성은 모든 범죄에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특정사기범죄에 대하여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

48) 「사기방지 기본법안」(2117062, 김용판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검토보고서 참조

9. 가중처벌

- 제정안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저지를 자가 ① ▲범죄목적 단체·집단을 구성·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②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상습적으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 형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 정 안
제37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①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2.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1.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상습적으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등의 형량과 상습범 여부 및 이득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는 아래와 같음.

【표6】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현행 처벌 수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형법)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법)
1년↑ 징역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상당 벌금 (§15의2)	20년↓ 징역 5천만원↓ 벌금 (§347, 347의2)	5년↓ 징역 5천만원↓ 벌금 (§6)
상습범 1/2 가중 (§15의2)	상습범 1/2 가중 (§351)	-
-	상습범 이득액 5~50억원: 3년↑ 유기징역 상습범 이득액 50억원↑: 무기 또는 5년↑ 징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 제정안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가 범죄목적 단체·집단을 구성하거나 단체·집단에 가입·활동한 경우, 이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억제하려는 취지임.

□ 다만, 범죄목적 단체·집단 구성·가입·활동과 상습범의 경우에는 현행 「형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에서 가중처벌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형법」 제114조⁴⁹⁾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가입·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9)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이러한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와 사기죄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등은 실체적 경합범⁵⁰⁾ 관계⁵¹⁾에 있으므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함께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됨.

○ 다음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제4항⁵²⁾과 「형법」 제351조⁵³⁾는 상습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또는 사기죄 등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현행 「형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동일한 가중처벌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고 있으나, 기존에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⁵⁴⁾에 대해 형벌체계 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5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51)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327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6909 판결 등

5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53)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배된다고 결정⁵⁵⁾한 바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해 추가적인 가중처벌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6

54)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를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위헌, 2011헌바2, 2014. 4. 24.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되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5)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19,23(병합) 결정 이유 중]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 또 형사특별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른 새로운 가중처벌사유가 추가될 때에만 그 가중처벌이 의미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함으로써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너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바2; 헌재 2014. 11. 27. 2014헌바224등 참조).